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항만기술산업의육성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항만기술산업은 공급망 거점인 항만 구성·운영의 필수 요소로써 물류비 절감, 경제 안보 등과 직결되는 기간 산업이나, 미국·중국 등 항만선진국 또는 국내 타 신산업 대비 관련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35호, 2024. 1.23. 공포)됨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안 제2조)

항만기술산업은 하역시설 및 부품 관련 산업, 항만 운영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항만 운영 지원을 위한 유·무선통신망, 센서 관련 산업, 위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교육 관련 산업으로 규정하고 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항만기술산업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학교, 항만공사 등으로 규정

나.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중요한 변경 등(안 제3조)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을 변경 시에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하고 시범사업구역의 지정은 육성계획에 포함토록 규정하며 육성계획 수립 시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을 규정

다.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안 제4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세부내용, 실태조사 수립 및 통계 작성·관리의 주기, 필요 시 조사·연구 의뢰가 가능함을 규정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안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마. 전문기관 양성기관 지정 등(안 제6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 및 기준과 지정, 지정취소 시 공고 규정을 명시

바.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 등(안 제7조)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 및 기준과 지정, 지정취소 시 공고 규정을 명시

사.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 범위(안 제8조)

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에서 위임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아.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등(안 제9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감면 관련 세부사항은 항만법을 준용토록 명시

자.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대상 등(안 제10조)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대상을 규정

차.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등(안 제11조)

시범사업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 명시

카. 업무의 위탁(안 제12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법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 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및 부품 관련 산업
2. 항만 운영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3. 항만 운영 지원을 위한 유·무선통신망, 센서 관련 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 관련 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국내 사업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5. 「항만공사법」에 해당하는 항만공사

6.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7.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제3조(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중요한 변경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법 제5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시범사업구역의 지정을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항만기술

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통계”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항만기술산업 국내외 시장 여건 및 전망

2. 항만기술산업사업자 현황 및 수주·납품 실적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및 성과
4. 항만기술산업 관련 인력현황
5.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추진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1년 단위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단체, 연구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항만장비의 운용 및 실습 비용
4. 법 제9조제1항제3호와 관련된 개발비용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7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항만 기술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기술산업에 대한 연구실적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것

2.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 범위) 법 제11조, 법 제12조 및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항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2. 「항만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제9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

2.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항만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대상 등) 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영 제2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또는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위치하는 구역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작성 및 관리 업무
2.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홍보,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 지원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9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9조 제4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9조 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제4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0조 제4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0조 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연 락 처	(044) 200 - 5941